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
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7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허성무 · 김교홍
이성윤 · 박희승 · 장철민
신정훈 · 민병덕 · 주철현
박홍배 · 박 정 · 송옥주
김윤덕 · 서영교 · 김우영
서삼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, 나포(拿捕)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하지만,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,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

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3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
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추징한다”를 “추징하고, 그 추징액은 「수산업·어촌
발전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(이하 “수산발전기금”이라
한다)에 납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귀속된다”를 “귀속하고, 국고
에 귀속되면 해당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귀속된다”를 “귀속한다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반환”을 “수산발전기금 납입, 담보금 반환”으로 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불법 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) ① 해양수산
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등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
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
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, 신체 등 인적 피해 또는 선박,
어구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
2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지역의 수산자원 회복에 대

한 지원사업

3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점검에 대한 지원사업
 4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의
복지 지원 및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
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몰수 또는 추징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	제21조(몰수 또는 추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추징하고, 그 추징액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(이하 “수산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에 납입하여야 한다.</u>
제24조(담보금의 보관·국고귀속 및 반환 등) ① (생략)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. 다만,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	제24조(담보금의 보관·국고귀속 및 반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귀속하고, 국고에 귀속되면 해당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2. (생략)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.

④ (생략)

제25조(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)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,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귀속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) -----

-----수
산발전기금 납입, 담보금 반환-----

-----.

제27조(불법 어업활동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) ①
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
수역 및 영해 등에서 외국인의

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, 신체 등 인적 피해 또는 선박, 어구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

2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지역의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지원사업

3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점검에 대한 지원사업

4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의 복지 지원 및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
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